

화협상담실

화협상담실은 안전점검과 화재보험
방재기술지도 등 특수건물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궁금증과 알고
싶으신 사항을 상담해 드립니다.

● 방재상담

문: 1973년 5월에 건축한 오락 시설 용도의 건물입니다. 거실의 내장을 난연성 재료이상으로 불 연화하라는 지속적인 권유가 있어 난연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난연처리시 불연재료로의 인정 여부와 불연화하여야 하는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답: 한국공업규격 KSF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난연1급으로 판정되면 불연재료로, 난연2급은 준불연재료로, 난연3급은 난연재료로 인정합니다. 다만 표면도장이나 화장재료의 첨부 또는 바탕재료에 따라 방화성능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법적근거를 소개하면 1973. 9. 1 또는 1978. 10. 30 개정 이전의 기존 건축물은 경과조치기간인 1978. 6. 30 및 1979. 12. 31이 지났으므로 현 시점으로 보아 내장재불연화 대상이 됩니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200m² 이내마다 방화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질의자: 협성B/D〉

응답자: 점검1부〉

문: 할로겐화물 소화약제의 소화원리와 소화제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답: 할로겐화물 소화약제는 비소, 염소, 취소, 옥소와 같은 할로겐계 원소중 하나 또는 몇개의 원자를 함유하고 있으며 화학적으로 대단히 안정된 소화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약제를 사용하여 가연물과 산소의 화학반응을 억제하고 냉각과 희석작용으로 소화하게 됩니다.

할로겐화물 소화약제는 숫자로 표시하는데 이 숫자는 소화약제의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에 따른 호칭번호이고 C, F, Cl, Br의 순서로 원자수를 표시한 것입니다. 할론1011과 할론2402는 상온에서 액체이며, 할론1211과 할론1301은 기체로서 제4류 위험물 또는 준위험물이나 가연성가스, 전기설비의 화재에 유효합니다. 주로 많이 채택되는 것이 할론1301 소화설비입니다.

〈질의자: 새한산업〉

응답자: 점검1부〉

문: 약전류전선의 정의를 알려주십시오.

답: 약전류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기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후 그 위를 보호피복으로 보호한 전기도체, 소세력회로의 전선 또는 출퇴표시 등 회로의 전선으로서 다음의 전선회로를 말합니다.

① 인터폰, 화성기 등 음성의 전송회로

② 고주파 또는 펄스에 의한

신호의 전송회로

③ 최대사용전압이 10V 이하이고, 사용전압이 5A를 넘지 아니하는 전기회로

④ 단락전류가 1mA 정도 이하의 전기회로

⑤ 전압의 최대값이 60V 이하의 직류전기회로로서 소세력회로에 준한 것

〈질의자: 아진산업〉

응답자: 점검2부〉

문: 에스컬레이터 또는 엘리베이터 등 수직부 계통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유의할 점을 알고 싶습니다.

답: 계단 경사로에 설치하는 연기감지기는 실내에 면하는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 하부 등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위치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에스컬레이터도 계단과 같이 수직거리 15m(3층은 10m)마다 1개이상 설치되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승강로는 그 정상부에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엘리베이터 기계실과의 사이에 개구부가 있으면 그 개구부의 면적에 관계없이 기계실의 천정면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면 승강로의 정상부에는 연기감지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질의자: 동양B/D〉

응답자: 대전지부〉

●보험상담

문: 국내 화재보험보통약관으로 개별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대구 침산동 소재 제과공장의 현 개별요율을 영문장기계약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영문요율 구득요령, 장기계약시 적용요율, 폭발위험이 상존하는 해당 물건 및 기계류에 대한 폭발특별약관요율의 추가삽입 가능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귀하의 공장은 영문요율 구득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관계 서류(영문요율 구득신청서, 건물 평면도, 소화설비 배치도 등)를 각 3부씩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영문화재보험의 장기계약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첨부할 수 있으며 본 특약 추가에 따른 보험료의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아울러 폭발위험담보 특별약관도 추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자: 동양제과

응답자: 업무부〉

문: 영문요율을 구득, 전 건물과 시설에 대해 화재보험영문요율로 화재보험에 계약되어 있는 호텔입니다. 약 4개월에 걸쳐 객실 및 로비, 메인바 등에 대한 개·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화재보험영문요율상 보험료의 추가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십시오.

답: 귀 호텔의 보수공사에 따른 요율은 시공업자에게 대위권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건물의 개·보수공사 기간중 총 보험가입금액에 대하여 0.025%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자: 롯데호텔

응답자: 업무부〉

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4조(보험에의 가입 등)에서 규정한 손해보험이 농업협동조합에서 영위하는 공체를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규정 중 ‘손해보험’이라 함은 상법 및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사업자가 영위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따라서 농업협동조합이 영위하고 있는 공체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서 보험업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체는 공제회원을 위한 이익단체로서 보험이 아니므로 동 공제조합에 가입하였다 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4조의 손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자: 정부종합청사

응답자: 기획조정실〉

문: 평소 주택관리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귀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당 아파트는 78년도부터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만 주택공사로 부터 소유권을 이전한

세대는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아직까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세대(주택공사 명의로 된 세대)는 주택공사에서 일괄계약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동주택단지의 부속건물로서 주민의 공동재산이며 주택관리에 필수적인 보일러 및 변전시설 등은 별도로 화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요.

답: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실 및 변전실, 보일러실 등(이하 ‘부속건물’이라 함)은 주건물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부속건물로서 이의 보험가입은 다음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부속건물이 입주자의 공유지분에 포함, 등기되었을 경우에는 부속건물을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세대별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이 되며, 이때의 보상방법은 보험사고 발생일 현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총면적에 대한 가입면적의 비율에 따라 실손해액을 산출하여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제13조에 따라 보상하게 됩니다.

② 부속건물이 입주자의 공유가 아닌 별도의 개인 또는 단체의 소유라면 소유자가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의자: 잠실5단지아파트

응답자: 업무부〉